의 안 번 호	제473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17일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 의 자 : 이의영,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양섭,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 도시농업인 지원 및 교육훈련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안 제7조)

○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례안예고 : 2023. 11.

○ 협　　의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 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지원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홍보방안

5.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4.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활동 보급에 관한 사업

5.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충청북도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발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 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

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2. 비용 발생 요인

○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비용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 11개소
  *개소당 9백만원 /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나. 추계결과 : 495백만원(도비 149 시군비 346)

-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 9백만원 × 11개소 × 5년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는 매년 29.7백만원 소요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 계
세 출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148,500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148,500
재원조달							
자체 수입	소계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148,500
	세외수입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148,500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이수현